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

(전자적무역결제금융 거래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년 월 일

본인 : (인)
주소 :

본인은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체결한 년 월 일자 외국환거래 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지급보증, 여신거래, 포괄
한도거래)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조 (거래조건)

- 본인은 이 약정서에서 정의된 은행의 전자적무역결제금융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은행이 전자적 접속을 허용하는 e-MP(이하 "Importer e-MP"라 함)'를 이용하여 본인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전자적무역결제금융 거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상기 e-MP를 통해 인
지하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이나 거래위험, 기타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조사하고 판단한 후 신청할 것입니다.
- 본인은 해당 금융 거래 시 수출상의 신용상태, 무역거래 자체 등에 관하여 은행이 제13조에 정의된 지급보증 책임을 제외한 어떠한 책임
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 "전자적무역결제금융"이라 함은 GuTT (Guaranteed TT)과 GPL(Global Purchasing Loan)을 의미합니다.
- "GuTT"이라 함은 본인이 Exporter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본인의 지급약약을 조건부로, "은행"이 상기 수입대금의 만기일 송금에 대
하여 보증하거나 상기 수입대금의 만기일 전 선입금을 Exporter에게 지급하는 무역대금 결제솔루션을 의미합니다.
- "GPL"이라 함은 본인이 Exporter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본인이 신청하면 "은행"이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본인의 신용한도 범위 내에
서 외화대출을 제공하고 상기 대출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Exporter의 대금수취계좌로 상기 수입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무역대금 결제솔루
션을 의미합니다.
- "Exporter" 라 함은, 본인에게 물품을 수출하고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적무역결제금융을 이용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Importer지급약약조건부지급보증"이라 함은 '지급약약기한 만료일 이내에 본인이 "은행"에게 수입대금에 대한 지급약약을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Exporter 앞 확정지급보증을 하겠다' 는 조건부 보증을 의미합니다.
- "지급약약" 이라 함은 본인이, Exporter가 발행한 e-Invoice를 확인하고, '특정 만기일에 그 대금지급을 하기로 약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확정지급보증"이라 함은 본인이 "지급약약"한 거래에 대하여 "은행"이 만기일에 Exporter에게 지급약약액을 지급하기로 약약하는 행
위를 의미합니다.
- "지급약약액"이라 함은, 전자적무역결제금융거래에서 본인이 Exporter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수입대금으로, 금융이자와 수수료가 공
제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 "지급약약기한 만료일"이라 함은 본인이 Exporter에 대한 지급약약여부를 은행에 통지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 "GuTT"에 관하여 "만기일(Maturity Date)"이라 함은 '본인이 Exporter에게 당해 수입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일자로서 Exporter와 "은
행"에게 통지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상기 Exporter에게 통지한 만기일과 "은행"에게 통지한 만기일은 일치하여야 하나, 만일 상이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통지한 만기일이 본 약정서에서 정의하는 만기일이 됩니다.
- "GPL"에 관하여 "만기일(Maturity Date)"이라 함은 수입대금 결제용 대출인 GPL을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 "선입금"이라 함은 본인이 은행에 통지한 지급약약에 표기된 "만기일" 전에 은행이 상기 지급약약에 표기된 "지급약약액"을 할인하여
Exporter에게 송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금융이자"라 함은 GuTT의 선입금에서 발생하는 할인이자(즉, 할인전 지급약약액 - 할인후 지급약약액)나 GPL의 대출에 대하여 발생
하는 대출이자를 의미합니다.
- "지급보증료"라 함은 GuTT이용시 본인의 지급보증 신청에 대해서 은행이 Exporter에게 지급보증하는 대가로 본인 또는 Exporter가 은
행에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수수료"라 함은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적무역결제금융을 이용하는 대가로 본인이 은행에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e-Invoice"라 함은 Exporter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에, 본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물품명세를 의미
합니다.
- "전자적시스템"이라 함은, 보안솔루션이 장착된 인터넷 또는 기타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본인과 은행이 전자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은행이 본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적 통신장치를 의미합니다.
- "Exporter의 대금수취계좌"라 함은, 본인이 전자무역결제솔루션 신청 시 Exporter의 대금수취계좌로 등록된 계좌로서, 본인이
Exporter의 대금수취계좌임을 확인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 "지급계좌"라 함은 본인이 동 금융이용에 따른 각종 수수료, 금융이자, 지급보증료, 원금 등을 상환하기 위해 은행에 등록된 계좌를 말
하며 원화계좌와 외화계좌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대지급금"이라 함은 본인이 신청한 특정 GuTT 거래를 위해 "은행"이 Exporter에게 확정지급보증을 통지한 후, 본인이 상기 특정



GuTT 거래의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이 본인을 대신하여 Exporter 앞 송금하는 ‘지급확약액’을 의미합니다.

제 3조 (Exporter 정보의 등록 및 관리)

본인은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적무역결제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Exporter의 기본정보 및 송금처리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효하게 은행에 등록, 갱신하기로 합니다.

제 4조 (거래 신청 및 취소)

- ① 본인은, 전자적무역결제금융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전자적시스템의 전자적무역결제금융 거래신청화면에 신청내역을 입력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신청내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전자적무역결제금융 상품선택 (GuTT(지급보증, 선입금), GPL(선입금))
 2. 무역거래정보(계약서번호, Exporter명, 물품명, HS코드)
 3. 금융신청내역(통화, 금액, 송금일, 만기일, 지급방식(사전,사후), 지급확약기한 만료일)
 4. 금융이자의 부담 주체 (본인, Exporter) (단, GPL의 경우에는 본인만 부담 가능)
- ③ 본인이 신청하고 “은행”의 승인이 완료된 특정 전자적무역결제금융 거래의 취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GuTT 거래의 경우로서 본인이 “지급확약” 통지를 은행에 통보하기 전인 경우
 2. GPL 거래의 경우로서 본인이 송금일자로 지정한 날의 전 영업일 이내인 경우

제 5조 (GuTT 거래에서의 지급확약 통지 의무)

- ① ‘GuTT’ 거래를 신청한 경우, 본인은 신청시 등록한 지급확약기한 만료일의 은행 영업시간(16:00시)까지, 전자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은행에 유효하게 ‘지급확약’ 여부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② 본인이 제1항의 ‘지급확약’을 등록한 경우로서 선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Exporter에게 송금하고자 하는 송금일자’를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③ 본인이 제1항의 기한내 은행에 지급확약여부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지급확약 거절’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 6조 (여신거래 등의 인정 시기)

- ① GuTT 거래 중 ‘지급보증’의 경우
본인이 전자적시스템에 신청한 일자를 지급보증일로 하고 GuTT 거래의 만기일까지를 지급보증기간으로 합니다.
- ② GuTT 거래 중 ‘선입금’의 경우
본인이 전자적시스템에 신청한 일자를 지급보증일로 하고 본인이 ‘선입금’ 요청시 전자적시스템에 등록한 송금일자 전일까지를 지급보증기간으로 하며, 상기 송금일자를 대출일자로 합니다.
- ③ GPL 거래 경우
본인이 전자적시스템에 등록한 GPL 신청내역의 ‘송금일자’를 대출일자로 합니다.

제 7조 (개별여신의 만기산정)

- ① “지급보증” 거래의 개별 만기일은 해당 한도여신의 여신만기일로부터 6개월 범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선입금(GPL포함)” 거래 시 개별 만기일은 해당 한도여신의 여신만기일로부터 3개월범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수수료 부과)

- ① 본인이 전자적무역결제금융 이용시 은행은 건당 ()원의 수수료를 지급계좌에서 인출하기로 합니다.
- ② 제6조 제2항의 선입금 송금일 또는 제6조 제3항의 GPL송금일에 은행은 건당 ()원의 수수료를 지급계좌에서 인출하기로 합니다.

제 9조 (지급보증료 납부)

- ① 본인은 은행의 전자적무역결제금융 이용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지급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요율(연) x 보증기간 / 360 x 매매기준율
 - * 보증기간 = 본인이 전자적시스템에 신청한 일자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일수 (단, GuTT 선입금의 경우 본인이 전자적시스템에 신청한 일자로부터 선입금 전일까지)
 - * 보증요율(연) =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등에 작성된 보증요율(연)
- ② 지급보증료는 원화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화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원화금액에 납부 당일의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한 외화금액을 납부합니다.
- ③ 제11조 제2항에 따라 Exporter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해 산출한 외화금액을 송금 시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 ④ 제1항의 지급보증료 중 본인이 전자적시스템에 신청한 일자로부터 지급확약기한 만료일 전일까지의 지급보증료는 본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은행은 지급보증 거래가 제4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기 징수 지급보증료를 아래의 기준에 의해 환출하여야 합니다.

* 환출 지급보증료 = 보증금액 x 징수당시 보증요율 x 환출기간 / 360 x 징수당시 매매기준율

* 환출기간 = 취소일 익일 ~ 기 징수한 보증기간의 만기일까지 일수

제 10조 (금융이자 납부)

① 본인은 은행의 전자적무역결제금융 이용시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금융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이자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 금융이자 = 선입금 x 기간별 외화대출 이율 x 대출기간 / 360

* 외화대출 이율 및 이자지급시기 =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에서 작성된 기준에 따름

* 대출기간 = 선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일수

② 제1항의 이자는 외화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화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당일의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을 납부합니다.

③ 제11조 제2항에 따라 Exporter가 금융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해 산출한 외화금액을 송금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제 11조 (지급보증료와 금융이자의 부담 주체에 따른 징수시기 및 요령)

①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1. 지급보증료는 은행에 지급보증 신청시 제9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하며, 은행은 상기 산출된 지급보증료를 본인의 지급계좌에서 인출합니다.

2. 금융이자는 대출일자에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하며, 은행은 상기 산출된 금융이자를 본인의 지급계좌에서 인출합니다.

② Exporter가 부담하는 경우

1. 지급보증료는 만기일에 Exporter 앞 송금시 제9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하며, 은행은 상기 지급확약액에서 상기 산출된 지급보증료를 차감한 금액을 송금합니다.

2. GuTT의 선입금에 대한 금융이자는 선입금 실행일에 제10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은행은 상기 선입금 금액에서 상기 산출된 금융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Exporter 앞 송금합니다.

제 12조 (만기 상환)

① 본인은 본인이 선입금을 신청한 경우 그 해당 만기일에 은행이 송금한 선입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본인은 본인이 지급보증을 신청한 경우 그 해당 만기일에 지급확약액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③ 본인은 본인이 GPL을 신청한 경우 그 해당 만기일에 외화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은행의 지급보증 책임)

① GuTT 거래에서 본인이 '지급확약액'을 그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만기일의 익영업일에 아래의 산식에 의해 대지급 실행하여 동 지급확약액을 Exporter의 대금수취계좌로 송금합니다.

* 대지급금 = 지급확약액 x 대지급실행 당시 전신환매도율

② 본인은 제1항에 의해 은행이 실행한 대지급금 원금 및 제14조에서 정한 연체이자 적용 기준에 의해 발생한 연체이자를 함께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 14조 (연체이자 적용 기준)

본인은 제 12조의 만기일에 지급확약액 전액을 은행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른 연체이자를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체이자 = 미상환금액(또는 대지급금) x 은행계정연체이율 x 연체기간 / 365 (외화대출의 경우 360)

* 연체기간 = 미상환금액발생일(또는 대지급금발생일)로부터 미상환금액(또는 대지급금)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

* 은행계정연체이율 :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에서 작성한 기준에 따름

제 15조 (책임 및 손해배상)

정전, 화재, 통신장애, 환거래은행의 입금지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서비스가 지연되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이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상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 16조 (그 밖의 처리기준)

① 은행은 전자적무역결제금융과 관련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은행 홈페이지에 고지하기로 합니다.

②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외환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외국환거래약정서 및 지급보증거래약정서(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